

인천 강화 서희스타힐스 인지세 납부 안내

◎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**최고 300%의 가산세**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: 15만원)를 납부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

- 과세대상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·기한 방법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·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 작성시 제출

■ 가산세 개정사항('21.1.1. 부터 적용) *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 4 제9항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◎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-전자수입인지 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4 구매- 납부정보입력

- ①용도: 인지세납부
- ②과세문서종류: 1.부동산등 소유권이전
- ③금액: 150,000원
- ④건수: 1건
- ⑤확인및결제

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



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상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재발행불가)